2025년도 제1회 당진우체국 특수지집배원(공무직) 채용시험 공고

당진우체국에서 우편물 배달 관련 업무를 담당할 특수지집배원(공무직)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3. 19.

당진우체국장

1. 채용 직종 및 인원

채용직종	인원	근무예정부서 (근무지역)	담당업무	비고
특수지집배원 (공무직)	1명	당진우체국 (합덕)	- 우편물 배달 및 수집 - 우체국택배 및 국제특급우편물 방문접수 - 우편물 구분 및 상·하차보조	

2. 근무 조건

가. 신분 : 공무직근로자(비공무원)

*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 최초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운영하며, 동 기간 중 업무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평가하여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습기간 만료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나. 보수 : 일급+ 수당 등 (※ 보수표에 따라 변경 가능 : 약 215만원 이상)

- 기본연봉 : 일급, 직무수당, 근속수당(1년이상), 명절보로금
- 실적수당 :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상시출장여비 등
- 기타 : 4대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등

다.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 **기본근무 : 월요일~금요일 , 오전8시00분~오후17시00분(유연근무)**
- 휴게시간 :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 연장근로, 휴일(월요일)근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

라. 휴가 : 연차유급휴가, 공무유급휴가, 특별유급휴가 등

마. 업무특성 : 대국민 우편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만족 마인드가 필요하며, 일평균 1,000여통 이상의 통상우편물과 20kg상당(최고 30kg)의 소포를 배달하기 위한 체력과 업무처리를 위한 정보화 능력 필요

3. 응시 자격

※판단기준일 : 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가. 응시연령 : 최종시험일 현재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62조(근무상한 연령)
-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상한 연령은 60세로 한다.
- 근로자는 근무 상한 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근무할 수 있다.

나. 자격증 :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 소지자***

* 제2종 보통면허 중 '조건:A(자동)' 면허 소지자는 수동형 1톤 탑차 운전 불가능하여 제외

다. 지역제한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응시자격 제한

  ㅇ 우정사업조직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최종시험일 현재 우편관계법령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응시불가

  ㅇ 결격사유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채용 불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헌법불합치, 2020헌마1181, 2022.11.24,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 및 군인사법(2019. 1. 15. 법률 제1622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2항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헌법불합치, 2020헌마1605, 2022헌마1276(병합), 2023.6.29,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 및 지방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0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4. 우대요건(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나. 정보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ㅇ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기술자격(ITQ),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인터넷정보관리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발행 한) 중 1개 이상 소지자

다. 근무경력

ㅇ 집배 업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ㅇ 우체국택배원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ㅇ 재택 · 통상 · 소포위탁배달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시험 방법

시험단계 / 채용분야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특수지집배원	서류전형	면접시험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미만인 경우에는 응시자의 자격요건, 결격사유 등을 심사하여 적격 · 부적격 여부만을 판단

ㅇ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 서류전형 심사기준

심사항목 / 배점	자격요건 만족도	직무관련 경력	자기소개서 충실성실성	정보화 자격증	무사고 경력	취업지원 대상자 등
100점	40점	20점	20점	10점	5점	5점

나. 제2차 시험 : (영상)면접시험

ㅇ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 공무수행에 필요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 품행과 성실성, 창의력 · 의지력과 발전 가능성 등

ㅇ 면접점수 상위 순위자부터 채용목표 인원 순으로 합격자 결정

6. 응시서류 접수

가. 원서교부 : 나라일터, 충청지방우정청, 당진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2025.3.21.(금) ~ 3. 26.(수),** 09:00~18:00 **(4일간, 휴일제외)**

※ 단,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문접수 불가함

다. 접수처 : 당진우체국 3층 우편물류과 (☎ 041-360-2532)

- 우편접수 주소: (우)31776 충남 당진시 당진중앙2로 158 당진우체국 우편물류과
- e-메일 접수 주소: tax30005560@korea.kr

※ e-메일 접수시 서명이 기재된 스캔본으로 접수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실적급 상시계약집배원 응시원서 재중』** 표시

라.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제출**(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또는 등기우편 접수 및 e-메일 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25.3.26.(수)) 익일특급 등기우편 접수분까지 유효

※ 전자우편으로 응시서류 접수 시, 제출서류는 PDF,JPG 파일로 제출 . 전자우편 응시서류 접수의 경우, 이후 면접 진행시 제출했던 (파일)서류의 원본 추가 제출

※ 채용부서의 접수확인 답신이 없을 경우, 기한 내 채용부서를 통해 접수완료 여부 확인

※ 접수 후 개인별 응시번호는 응시원서에 기재된 전화번호(휴대폰)으로 통화연락 및 단문메시지(SMS)로 안내예정이며, 응시표는 면접시험 대상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일 배부

마. 유의사항

ㅇ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단위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각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미제출 또는 기재 착오 및 누락이나 합격자발표 미확인 ·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증빙서류(경력·자격증 등)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허위사실 기재 또는 위·변조 시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시행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7.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모집공고 : **2025. 3. 19.(수) ~ 3. 26.(수)** 8일간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25. 3. 21.(금) ~ 3. 26.(수)** 4일간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3. 27.(목)** 당진우체국 홈페이지 게시

라. (영상)면접시험 : **2025. 3. 28.(금)**

※ 응시자는 반드시 신분증(주민증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시작 30분전까지 지정한 장소에 입실 완료하여햐 함.

마.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4. 1.(화)**

※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기시험이 통과된 자 중 면접성적이 우수한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바.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 발표 등 모든 시험일정은 당진우체국 홈페이지에 게시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나. 이력서 1부

다. 자기소개서 1부

라.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부

마. 범죄경력 부존재 확인서 1부

바. 운전경력증명서 1부

○ 면허발급 이후 **전체기간**의 운전면허경력, 법규위반, 교통사고 내역이 나타나야하며, **운전면허경력 란에 면허취득일자는 반드시 표기**되도록 조회된 증명서 제출

사. 주민등록초본 1부

ㅇ 주소변동 이력 표시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하여 발급

※ 남자는 병적사항이 기록된 것, 미필자는 병적증명서 제출

아. 경력증명서 1부(집배, 택배접수업무, 재택・통상・소포위탁배달원 및 택배회사 배달업무 근무경력자에 한함)

ㅇ 경력사실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포함

※ 민간택배회사 근무 경력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 확인서'제출

자. 정보화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차.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 우대요건 증빙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각 서류는 공고일(2025.3.19.)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하며, 누락(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자격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붙임의 서식은 **A4사이즈 '기본인쇄'로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시험일 3일전까지 당진우체국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최종 합격자 통지 후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격(결격사유)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 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진우체국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ㅇ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진우체국 방문신청, 이메일(tax30005560@korea.kr),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ㅇ 당진우체국은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3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라. 특수지집배원은 비공무원이며, 공무직으로 채용되어 정년은 60세까지로 하며, 최초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운영됩니다. 수습 중의 보수는 동일하게 지급되나,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마. 접수마감 후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보다 적거나(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 같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공고합니다. 또한 면접시험에서 응시자의 채용기준 미달시 선발예정 인원보다 채용인원을 적게 선발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진우체국 우편물류과(041-360-2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